

구미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번호	
------	--

제출일자 2009. 5.

제 출 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읍·면·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가 신청에서 누락되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에게 서면 등 고지를 통하여 신청토록 하였음

2.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5조 제2항 중 “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”를 “서면 등 고지를 통하여 신청하도록 한다”로 한다

3. 참고사항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

구미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제2항중 “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”를 “서면 등 고지를 통하여 신청하도록 한다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제5조(지원신청 등) ① (생략)	제5조(지원신청 등) ① (원안과 같음)
② 읍·면·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 에게 <u>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.</u>	② <u>서면 등 고지를 통하여 신청하도록 한다.</u>
③ (생략)	③ (원안과 같음)

구미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저 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여성장애인”이라 함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 등록을 한 여성을 말한다.
2. “출산지원금”이라 함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.

제3조(지원대상)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미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.

② 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유고(사망 등)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.

제4조(지원액) 시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출산지원금을 신생아 1인당 장애 1~2급은 1,500,000원, 장애 3~4급은 1,000,000원, 장애 5~6급은 700,000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신청 등)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. 다만,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.

② 읍·면·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서면 등 고지를 통하여 신청하도록 한다.

③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원절차) ① 읍·면·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1.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

2.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

②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.

제7조(환수조치)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발의자 서명명부

(구미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)

[illegible]